

(참고1) 연구활동비(회의비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유지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)

구분	주요내용
규정	<p>【공동관리규정 제19조(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)】</p> <p>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별표2 <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></p> <p>▶ 직접비(연구활동비)</p> <p>사용용도 7. 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</p> <p>계상기준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9조제12항 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.</p>
집행	<p>연구수행 중 당초 계획 변경 가능(5%이내 ↔ 5%이상)으로 집행정보는 현행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하게 등록 후 집행</p> <p>※ 아울러, 통합Ezbaro시스템에서는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함께 수집하던 품목/수량/단가 항목은 삭제하여 연구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</p>
정산	연구종료 후 집행결과가 직접비의 5%이내의 경우 전문기관 정산 시 검토범위에서 제외 예정

(참고1)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항목 간소화

간소화배경 □ 데이터 입력 기반으로 운영되는 Ezbaro시스템의 경우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항목이 과다하여 연구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*이 많아 통합Ezbaro시스템 구축 시 개선방안 모색

* 대학·출연연 등 연구현장 간담회('18.7~9, 11회) :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시 품목, 수량, 단가 등 거래정보를 건별로 입력함으로써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

개선사항 통합Ezbaro구축 시 세목별 사용용도에 따른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항목을 대폭 간소화(전체 합계 526개 ⇨ 339개 (▼ 187개)) 및 표준화하고 함께 수집하던 건별 집행 거래정보의 등록은 삭제

입력항목	개선 전			개선 후
결의일자	2019. 4. 22			2019. 4. 22
결의제목	사무용품 구입			사무용품 구입
결의금액	55,000원			55,000원
검수일자	2019. 4. 30			2019. 4. 30
검수자	○○○			○○○
품명	연필	자우개	볼펜	<건별 집행 거래정보의 등록 삭제>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거래내역 정보)로 연동·대체
규격	개	개	개	
수량	10	20	30	
단가	1000원	500원	1000원	
공급가액	10,000원	10,000원	10,000원	
부가세	1,000원	1,000원	3,000원	
총구입액	11,000원	11,000원	33,000원	
지급처(사용처)	○○문구			○○문구
이체일자	2019. 5. 1			2019. 5. 1
지급액(이체금액)	55,000원			55,000원
이체수수료				
계좌번호	123-456-789-0			123-456-789-0
은행명	○○은행			○○은행
예금주	○○○			○○○

(기존)전자세금계산서상 정보를 품명/수량 등으로 일일이 나누어 시스템에 입력

(개선)전자세금계산서상 정보로 일괄 대체(별도 입력 절차 불필요)

[참고2] 종이영수증 폐지 방안

검토배경

「계산증명규칙」(감사원), 「회계예규」(기재부) 상의 원본, 서명 등의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하여 해석함에 따라, -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·정산 시 증빙자료인 영수증*을 전자문서로 보관 가능함에도 종이로 일일이 출력하여 이중 보관하는 등 연구자의 연구 몰입 시간 낭비

*신용카드 매출 전표, 세금계산서·계산서

「계산증명규칙」(감사원), 「회계예규」(기재부)에 대한 **유권해석**을 통해 **종이영수증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짐**

아울러, 개정 「공동관리규정」(과기정통부)에서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(영수증서)의 경우 **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**으로 명시

개선방안

- 1 계산증명규칙
 - 신용카드 거래정보가 전자적으로 보관·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함으로써 **매출전표(종이문서)의 보관 대체**
- 2 회계예규 등
 - 카드전표 서명 시 실명을 기재토록 한 규정(책임소재 명확화)에 대해 카드 사용자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를 시행한 경우 **동일효력 인정**
- 3 부처별 관리규정
 -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전자적 형태로 보관가능 함을 명시하여 시행

[참고2] 종이영수증 폐지 방안

제도개선에 따른 연구수행기관 영수증 보관방식

정보처리시스템(ERP) 보유기관

전제사항 연구기관에서 ERP/MIS를 통해 카드사로부터 카드 사용 거래정보를 직접 전송받아 전자적으로 보관

프로세스

- ① 카드사에서 연구비 집행내역을 송부할 때, 종이영수증으로 표기되는 **모든 항목들을 연구기관 ERP로 전송**
- ② 다만, 연구기관은 **전송 항목 중 부분을 선택**하여 ERP에서 수신하는 형태로 구현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카드 사용 거래정보에 있어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발생
- ③ 따라서, 연구기관은 ERP에서 ① **카드사로부터 수신 받는 항목**과 ② **카드 사용자가 작성해야 할 항목**으로 구분하여 카드 사용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필요
- ④ ①카드사정보 적정 거래임을 증명하는 수준으로 카드사로부터 거래정보 수신 필요
- ④ ②사용자정보 해당 연구비 집행내역의 사용목적과 사용자 실명이 정확히 명기될 필요(감사원 의견)

※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위해 연구기관은...

- ① ERP에서 거래처명, 거래일시, 카드번호, 사용금액(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), 승인번호, 거래처 주소 등을 데이터 형태로 수신 받아 보관할 필요
- ② ERP에 사용목적과 사용자 실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결재될 필요

[참고2] 종이영수증 폐지 방안



카드 사용자 명의(실명기재) 전자결제 처리 절차 예시(모범 예시)

- ▶ 자동으로 생성·첨부되는 집행내역서에 카드사에서 직접 전송받은 **신용카드 거래정보와 입력한 사용목적, 사용자 실명 등이 표시**

(예시1) 신용카드 매출전표 형태로 작성된 집행내역서

카드내역서		
목적 : 법인카드신청서 시스템 개편을 위한 테스트 후 식비		
일시 : 2016.05.30 (월) 10:00 ~ 14:00		
장소 : KISA 본원 18층		
인원 (총 4) : 권도 , 이성 , 김은 , 강주		
카드내역내역		
카드종류	거래장부	
계정카드	비용	
카드번호	결제방법	
4553-0001-2114-6815	일시금	
거래일시	회도시 및 거래일자	
2016-05-30 09:43:47		
잔액 금액	17,500	
부가가치세	0	
공 시 료		
합 계	17,500	
거래장명	거래회 회계장부 (대표회일지)	
이달교리(가)선용역	원안시계	
대오차	승인번호	
호오차	30467442	
사단차용목적번호	전화번호	
1000027391	02-546-9557	
거래점주소	공공관리서 사인차번호	
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00-20 KTF내지	135828931	
영사금액	환분	주주료
	사용금액	
총 결제금액	서명	
	부호	

(예시2) 기관 자체 양식으로 작성된 집행내역서

집행내역서	
목적	법인카드신청서 시스템 개편을 위한 테스트 후 식비
일시	2016.05.30.(월) 10:00-14:00
장소	KISA 본원 18층
인원(총 4명)	권도 , 이성 , 김은 , 강주
카드번호	2016-05-2114-6815
거래일시	2016-05-30 09:43:47
공급가액	17,500
부가세	0
거래금액(합계)	17,500
가맹점명	비알고리아(주) 선릉역
가맹점주소	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90-20 KTF대치빌딩 1층
승인번호	30467442
사용자	권도